

구미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2. . .
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규정 일부를 시장에게 위임한 것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(안 제1조)
- 나. 교육 시간에 관한 사항(안 제2조제1항)
- 다. 교육 불참자 대리인 출석에 관한 사항(안 제2조제2항)
- 라. 교육통지서 발송에 관한 사항(안 제2조제3항)
- 마. 교육의 유예 및 면제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, 같은 법 시행규칙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- 다. 합 의 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구미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노래연습장업자 교육) ① 구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연 3시간 실시한다.

②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.

③ 시장이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·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3조(교육의 유예 및 면제) ① 시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.

1.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
2. 본인의 질병·사고,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
3.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

4.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

5.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

②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,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

제11조(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)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, 이하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, 재난예방,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1.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
2.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
3. 그 밖에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□ 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

제5조(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)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법 제11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·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교육대상자에게 통

지하여야 한다.

②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부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실시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해당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.

소 관 부 서		문화예술과
입 안 자	과 장	박 정 은
	담 당	오 명 화
	담 당 자	김 상 규 (480-6623)